

총무보사위원회 의안 심사보고

제출일자 : 1996년 11월 29일

제 출 자 : 제 8회 정기회

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

I.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1996년 11월 21일, 파주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1996년 11월 25일

다. 상 정 일 자 : 1996년 11월 25일 [제 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]

1996년 11월 26일 [제 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]

상정, 질의답변

1996년 11월 29일 [제 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]

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 권혁준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103조,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공보담당관실 “도서관계” 지적과 “부동산 관리계” 등 기구·인력승인으로
- 고용직(지도원) 공무원의 일부 정원을 시본청(총무과)에서 사업소 및 읍.면.동으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본청 - 2명 증

· 문화공보담당관실 “도서관계” 신설 - 4명(6급 1, 7급 1, 8급 1, 9급 1)

· 지적과 “부동산관리계” 신설 - 1명(6급 1)

· “부동산관리계” 인력보강 - 1명

— 법원읍(행·농 8급) 1명 ⇒ 행·건 8급으로 직렬조정후 부동산관리계

- 기타 본청정원 감축 - 4명
 - 총무과 기능(방호)10등급 1명 ⇒ 직렬조정(사역)후 금촌2동으로 조정
 - 지도원 정원 감축(3명) ⇒ 퇴직 1, 사업소, 금촌1동 1
- 사업소 - 증 1명
 - 공영주차장(1) : 지도원 1
- 읍·면·동 - 증 1명
 - 감(1) : 법원읍(행·농8급) ⇒ 부동산관리계(직렬조정 행·건8급)
 - 중(2) : 기능(사역) 10등급 1, 지도원 1 ⇒ 금촌1, 2동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홍 덕 기)

-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거 기구신설과 이에 따른 인력증원이 승인 되어,
-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도서관계, 지적과에 부동산 관리계가 신설되고 정원은 도서관계에 4명(6급~9급)과 부동산 관리계에 1명(6급)등 총 5명이 증원 승인되어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,
- 본청정원이 381명에서 2명이 증원된 383명, 읍면정원은 351명에서 352명으로, 사업소는 54명에서 55명으로 정원이 조정되는 것으로서 읍면업무 축소와 인력을 보강시키는 것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답변 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집행기관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